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96
----------	------

2020년 4월 23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0년 4월 6일
3. 상정일자 :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0년 4월 23일 상정·원안동의)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

구분	규모(m ²)	총계(건)	재정비(안)		비고
			존치	해제가능	
학교	329,720.5	29	29	-	

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단계별집행계획

구분	총계		1단계		1,2단계		2단계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학교	29	1,869,072	7	365,855	10	565,462	12	937,755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의견청취안은 202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396호로 제출되어 2020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안건 제출 배경

- 현행 「국토계획법」 제85조1)에는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 고시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2)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단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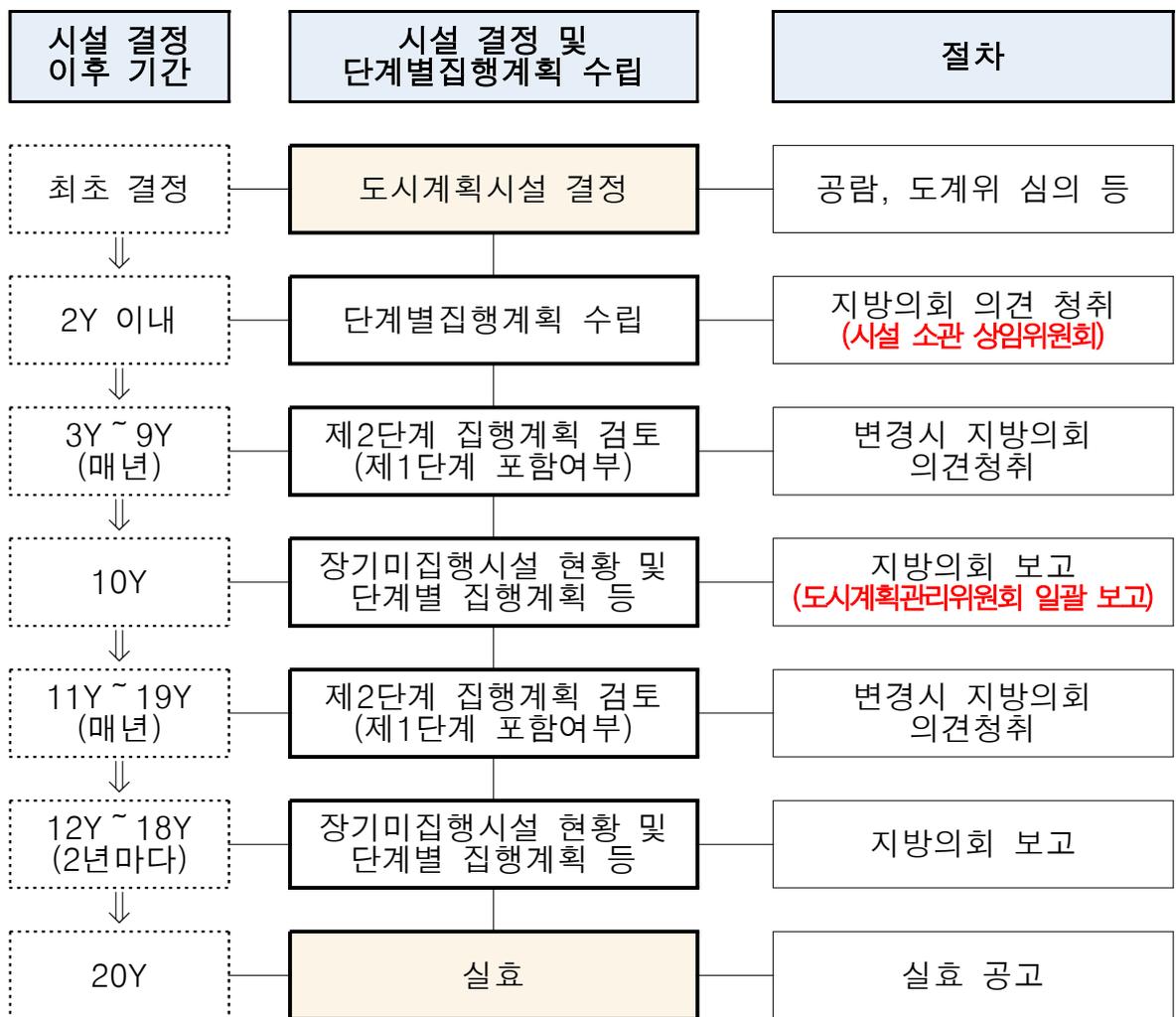
1)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³⁾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의견청취안은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예산의 심의 확정권한이 있는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절차도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국토계획법」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①~④생략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2017.9.19.>

제2조(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안건에 대한 의견

○ 동 건에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은 현재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구분되어 있는 전체 43건 중 학교설립소요가 미흡하여 해제가능한 부지 13곳과 이미 공고가 완료된 1곳⁴⁾ 등 14곳을 제외한 총 29건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

부지결정 경과기간	부지면적(m ²)	부지합계	추진계획		
			(설립)추진중	(설립)검토중	계획없음
20년 이상	139,737.3	12개소	1개소	4개소	7개소
10 ~ 20년	161,085.1	15개소	2개소	7개소	6개소
10년 이하	173,844.0	16개소	13개소	3개소	-
총 계	474,666.4	43개소	16개소	14개소⁵⁾	13개소

○ 동 건에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29건은 이미 기존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공고되었으나, 사업기간의 지연, 위치 및 면적의 변경, 조합의 기부채납과 SH 무상공급 금액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의 이유로 단계별집행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붙임]참조).

○ 다만, 동 의견청취안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중 2020년에 자동실효 대상이 되는 곳으로는 '강남구 일원동 737'을 포함하여 총 5곳이 있습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서울시고시 제3561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8~2025)												
사업명 (위치)	사업 기간	사업 규모 (m ²)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단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20	'21	'22	'23	'24	'25년이후
한남동 665-9	2023~	10,775.4	90,849	90,849	-	-	-	-	-	90,849	-	-	-	90,849		-

5) 검토중인 14개소 중 2020년 1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공고 완료된 부지(한남동 665-9) 1개소 제외

그러나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18-0068)⁶⁾⁷⁾에 따르면 ‘부지 조성만을 위한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8)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는 해석례가 있는바, 상기한 5곳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을 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존치하려는 것은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실효시기 해당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

연번	위치	면적(m ²)	결정고시일	재정비(안)	단계별 집행계획	실효 시기
8	강남구 일원동 737(산 63-1)	12,291.6	1990-02-02	존치	1단계	2020
13	서초구 잠원동 71-10	11,608.0	1986-05-17	존치	1·2단계	2020
14	서초구 잠원동 61-6, 18	10,556.1	1986-05-17	존치	1·2단계	2020
16	노원구 하계동 256-1	10,933.0	1989-09-26	존치	1·2단계	2020
25	강남구 압구정동 423,424	14,999.8	1981-07-07	존치	2단계	2020

○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의견청취안에 포함된 총 29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바, 총 32만 9,720.5m²의 규모에, 시비(교부금, 자체재원) 7,999억 2천 8백만원과 민간투자 671억 3천만원, 공공기여(기부채납) 1조

6)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18-0068), 2018.4.24.

~<중략>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사실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시행자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인가가 의제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른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7)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서울시장기미집행 실효고시 가이드라인에서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반영하고 있음.

8)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20억 1천 4백만원 등 총 1조 8,690억 7천 2백만원의 예산을 2025년까지 단계별로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해당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이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3] 단계별 집행계획(안)

(단위: 백만원)

총계		1 단계 (‘20년~’22년 완료)		1,2단계 (‘21년~’24년 완료)		2단계 (25년 이후 완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9	1,869,072	7	365,855	10	565,462	12	937,755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동의(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1396
----------	------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1일
제 출 자: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

구분	규모(㎡)	총계(건)	재정비(안)		비고
			존치	해제가능	
학교	329,720.5	29	29	-	

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단계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계		1단계		1,2단계		2단계	
학교	29	1,869,072	7	365,855	10	565,462	12	937,755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별첨 1]

4. 참고사항: 관련법령 [별첨2]

< 별첨 1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

연번	위치	면적(m ²)	결정고시일	재정비(안)	단계 별 집행계획
1	강동구 강일동 120-4 일원	12,000.0	2012-12-21	존치	1단계
2	강동구 강일동 121-3 일원	13,000.0	2012-12-21	존치	1단계
3	송파구 거여동 산49	10,334.0	2010-11-03	존치	1단계
4	송파구 거여동 산50	11,222.0	2010-11-03	존치	1단계
5	중랑구 망우동 306-37	10,780.0	2011-11-11	존치	1단계
6	강남구 자곡동 102 일원	10,624.0	2018-01-09	존치	1단계
7	강동구 둔촌동 180-1일원	16,124.9	2006-11-02	존치	1·2단계
8	강남구 일원동 737(산 63-1)	12,291.6	1990-02-02	존치	1단계
9	송파구 장지동 17	11,030.0	2010-11-03	존치	1·2단계
10	강동구 강일동 산 22-101 일원	11,194.0	2012-12-21	존치	1·2단계
11	동작구 흑석동 60 일대	14,047.0	2008-09-11	존치	2단계
12	강남구 개포동 산156-2일원(567-1)	9,877.0	2016-12-08	존치	2단계
13	서초구 잠원동 71-10	11,608.0	1986-05-17	존치	1·2단계
14	서초구 잠원동 61-6, 18	10,556.1	1986-05-17	존치	1·2단계
15	송파구 마천동 613(267-14)	6,903.0	2005-12-29	존치	1·2단계
16	노원구 하계동 256-1	10,933.0	1989-09-26	존치	1·2단계
17	서초구 방배동 974-3	8,112.0	2010-09-02	존치	2단계
18	은평구 진관동 246-5	10,223.1	2006-12-28	존치	1·2단계
19	강동구 강일동 53-1 일원	12,000.0	2012-12-21	존치	1·2단계
20	강동구 강일동 473-4	11,000.0	2012-12-22	존치	1·2단계
21	은평구 갈현동 285-241	7,752.0	2011-09-29	존치	2단계
22	서대문구 북아현동 544	9,069.0	2008-02-05	존치	2단계
23	동대문구 이문동 87-14	8,000.0	2008-01-07	존치	2단계
24	강북구 미아동 438	12,027.0	2010-03-18	존치	2단계
25	강남구 압구정동 423,424	14,999.8	1981-07-07	존치	2단계
26	서대문구 북가좌동 80-36	7,438.0	2007-04-12	존치	2단계
27	서초구 반포동 1300 일대	12,277.0	2017-04-27	존치	2단계
28	서초구 반포동 1305 일대	10,615.0	2017-04-27	존치	2단계
29	송파구 마천동 223	23,683.0	2008-09-11	존치	2단계
합 계		329,720.5			

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92호, 2019. 8. 20., 일부개정]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1. 7.] [대통령령 제3003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9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